

<b>제2025-59호</b> <b>2025년 7월 1일(화)</b>	<b>시 보</b>  <b>여수시</b>	<b>시 정 지 표</b>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5-31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
○ 여수시 고시	제2025-313호	금천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2
○ 여수시 고시	제2025-31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5
○ 여수시 고시	제2025-318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돌산읍 둔전리 1641)	6
○ 여수시 고시	제2025-319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돌산읍 둔전리 1641)	7
○ 여수시 고시	제2025-320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선원동 1198)	8
○ 여수시 고시	제2025-32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덕충동 767)	9
○ 여수시 고시	제2025-322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화양면 옥적리 1988-4)	10
○ 여수시 고시	제2025-32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신덕동 668)	11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1930호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 옛 성터거리 조성사업 조형물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12
○ 여수시 공고	제2025-1959호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19
○ 여수시 공고	제2025-1961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20
○ 여수시 공고	제2025-1973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장 송부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1
○ 여수시 공고	제2025-1975호	공시송달(보상협의) 공고(여수 오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22
○ 여수시 공고	제2025-1976호	여수시 유촌항 어촌뉴딜300 사무장 채용 희망자 모집 (제)공고	30
○ 여수시 공고	제2025-1980호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36
○ 여수시 공고	제2025-1983호	여수시 관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계획 공고	50
○ 여수시 공고	제2025-1985호	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53
○ 여수시 공고	제2025-1986호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61
○ 여수시 공고	제2025-1994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25수용0166)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70
○ 여수시 공고	제2025-1995호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72
○ 여수시 공고	제2025-1996호	도로지정 공고(신덕동 637-2번지 외 1필지)	87
○ 여수시 공고	제2025-2001호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9
○ 여수시 공고	제2025-2004호	한시적 일방통행 구역 지정 행정예고(간급)	104
○ 여수시 공고	제2025-2006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108
○ 여수시 공고	제2025-2007호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109

<b>회</b>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5 - 312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합니다.

허가번호 (허가일)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목적	점용·사용 면적(㎡)	점용·사용 기간	피 허 가 자	
					성 명	주 소
2025-016 (25. 6. 26.)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251-3번지 지선 공유수면	포락지 토지 조성, 오탁방지막 설치	3,794 [포락지 2,208, 오탁방지막 1,586]	'25. 6. 26. ~ '30. 4. 30.	김은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8길57

2025. 6. 26.

여 수 시 장

## 금천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천항 어촌뉴딜300사업(2022)’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시행계획(4차)을 수립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금천항 어촌뉴딜300사업
2. 사업목적  
자연재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보강을 통해 안전성 증대 도모, 정주 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대응 할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 소득 증대
3. 사업위치: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금천항 일원
4. 사업기간: 2022년 ~ 2025년(4년간)
5. 사 업 비: 5,034백만 원(국비 3,524, 지방비 1,510)

## 6. 사업내용

구분	기본계획 (2022.10.7)	시행계획 (3차) (2024.12.16)	시행계획 (4차)_금회 (2025.6.30)	시행계획 (잔여_설계중)	비 고
공통 사업	- 방과제 연장 - 소형선 부두조성 - 부잔교 신설 및 이설 - 퇴적물 정지작업	- 방과제 연장 - 소형선 부두조성 - 퇴적물 정지작업	- 방과제 연장 - 소형선 부두조성 - 퇴적물 정지작업	-	
특화 사업	- 다목적센터 조성 - 어울습터 (주차장 및 안내판) - 어울습터(공원광장) - 박신장 그래픽 벽화 및 지붕도색	- 다목적센터 조성 - 박신장 그래픽 벽 화 및 지붕도색	- 다목적센터 조성 - 박신장 그래픽 벽화 및 지붕도색	-	
S/W 사업	- 역량강화 - 사무장채용 - 지역협의체 운영 등	- 역량강화 - 사무장채용 - 지역협의체 운영 등	- 역량강화 - 사무장채용 - 지역협의체 운영 등	-	
기타	- 위탁비(수수료) - 설계비 등 - 기타 용역비 등	- 위탁비(수수료) - 설계비 등 - 기타 용역비 등	- 위탁비(수수료) - 설계비 등 - 기타 용역비 등	-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7.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 8. 기타사항

- 관련 서류는 여수시청 섬발전지원과(☎ 061-659-2287)와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061-740-1174)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1

## 시행계획 세부내역

구분	기본계획					시행계획(2차)		시행계획(3차)_금회			잔여(설계중)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증감액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① 공통사업	어항시설 정비	외곽시설	방과제 (부방과제)	L=54m	1,291.0	L=55m	1,426.6	L=55m	1,228.3	▲198.3	-	-	
		계류시설	소형선 부두조성	L=60m (A=600㎡)	270.0	L=65m (A=1,050㎡)	452.0	L=65m (A=1,050㎡)	508.5	56.5	-	-	
			부잔교 신설 및 이설	2개소 (15m×2개소)	203.0	-	-	-	-	-	-	-	-
		기타 어항시설	퇴적물 정지작업	V=4,500㎡	175.0	V=2,471㎡	135.4	V=2,471㎡	221.3	85.9	-	-	
	① 소계					1,939.0	2,014.0	1,958.1	▲55.9				
② 특화사업	정주개선	문화복지	다목적센터	A=291㎡	883.6	A=212.4㎡	1,051.0	A=212.4㎡	1,051.0	13.8	-	-	
			부지매입비	A=1,500㎡	420.0	A=1,500㎡	398.5	A=1,500㎡	398.5	-	-	-	
	관광진흥	관광레저	어울쉼터 (주차장 및 안내판)	A=179㎡	17.4	-	-	-	-	-	-	-	사업제외
			경관개선	어울쉼터 (공원광장)	A=1,130㎡	132.4	-	-	-	-	-	-	-
	관광진흥	경관개선	박신장 그래픽 벽화 및 지붕도색	54개소	237.6 <26.4>	32개소	309.8 <19.9>	32개소	295.3 <19.2>	▲14.5 <▲0.7>	-	-	
② 소계					1,691.0 <26.4>	1,759.3 <19.9>	1,758.6 <19.2>	▲0.7					
③ SW사업	역량강화	교육	교육 및 인력양성	1식	100.0	1식	100.0	1식	100.0	-	-	-	
		컨설팅	운영관리 및 지역활성화	1식	54.0	1식	54.0	1식	54.0	-	-	-	
		고용창출	사무장채용	1식	54.0	1식	54.0	1식	64.8	10.8	-	-	
		지역협의체	운영비	1식	22.0	1식	22.0	1식	13.8	▲8.2	-	-	
	③ 소계					230.0	230.0	232.6	2.6				
④ 사업지원	위탁비		수수료	1식	455.0	1식	394.8	1식	421.5	26.7	-	-	
	설계비	기본·시행계획수립		1식	220.0	1식	220.0	1식	220.0	-	-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399.0	1식	379.0	1식	405.4	26.4	-	-	
		기타 용역비 등		1식	100.0	1식	36.9	1식	37.8	0.9	-	-	
	④ 소계					1,174.0	1,075.4	1,084.7	54.0				
총사업비(①+②+③+④)					5,034.0 <26.4>	5,034.0 <19.9>	어촌뉴딜 합계 (①+②+③+④)	5,034.0 <19.2>	-			변동율 8.7%	

여수시 고시 제2025 - 317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합니다.

허가번호 (허가일)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목적	점용·사용 면적(㎡)	점용·사용 기간	피 허가 자	
					성 명	주 소
2025-017 (25. 6. 30.)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449-6번지 지선 공유수면	부잔교 및 도교 설치	849.3(직접)	'25. 6. 30. ~ '30. 6. 29.	작금자을 공동체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652

2025. 6. 30.

여 수 시 장

##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30일

## 여 수 시 장

- 다 음 -

허가 번호	허가 일자	점용 사용				피허가자	
		장소	면적 (㎡)	기간	목적	성명	주소
2025 -00025	2025. 5. 26.	돌산읍 둔전리 1641	20	'25.05.26. ~ '29.05.31.	축사 진출입로	유 지 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둔전길 40-42

끝.

##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30일

### 여 수 시 장

- 다 음 -

허가 번호	허가 일자	점용 사용				피허가자	
		장소	면적 (㎡)	기간	목적	성명	주소
2025 -00026	2025. 5. 26.	돌산읍 둔전리 1641	15	'25.05.26. ~ '29.05.31.	측사 진출입로	장 세 준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사도길 20

끝.

##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30일

## 여 수 시 장

- 다 음 -

허가 번호	허가 일자	점용 사용				피허가자	
		장소	면적 (㎡)	기간	목적	성명	주소
2025 -00028	2025. 6. 23.	선원동 1198	250	'25.06.23. ~ '29.05.31.	무선산 산림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물종다양성 증진사업	여수시장 (공원과장)	전라남도 여수시 사청리(학동)

끝.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30일

### 여 수 시 장

- 허가번호: 제2020-00019호
- 허가일자: 2025년 6월 7일
-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은 자
  - 김현정(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39-30)
-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피허가자	김 현 정	변경없음
장 소	덕충동 767	변경 없음
면 적	25㎡	48㎡
목 적	주택 진출입로	주택 진출입로
기 간	2020-06-26 ~ 2025-06-25	2020-06-26 ~ 2030-05-31
조 건	별첨	변경 없음

끝.

##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30일

## 여 수 시 장

- 다 음 -

허가 번호	허가 일자	점용 사용				피허가자	
		장소	면적 (㎡)	기간	목적	성명	주소
2025 -00029	2025. 6. 25.	화양면 옥적리 1988-4	16	'25.06.25. ~ '27.05.31.	태양광 발전시설 잔출입로	(유)옥적에너지 대표자 임경채	전라남도 여수시 왕남길 16-20

끝.

여수시 고시 제2025-323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30일

### 여 수 시 장

- 허가번호: 제2025-00031호
- 허가일자: 2025년 6월 27일
-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은 자
  - 여수시(하수도과장)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피허가자	하수도과장	여수시(하수도과장)
장 소	신덕동 668	변경 없음
면 적	496㎡	485㎡
목 적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변경 없음
기 간	2023-01-11 ~ 2028-01-10	변경 없음
조 건	별첨	변경 없음

끝.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 옛 성터거리 조성사업  
조형물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 옛 성터거리 조성사업 조형물 설계 및 제작·설치』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전부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6. .

여수시장

1. 모집분야 : 디자인, 조형물, 경관
2. 모집인원 : 예비인원 21명

(평가위원 수 7인의 3배수, 결원대비 분야별 1명 차순위선정)

모집분야	디자인	조형물	경관
모집인원(예비)	9	6	6

3. 응모자격

가. 자격조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②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③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공한 자
- ④ 평가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⑤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위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평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 나. 제외대상

- ①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②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③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④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자격요건 및 제척·회피 사유 등 파악을 위해 등록신청서 경력사항란은 반드시 작성

## 4. 평가위원 추천 및 등록

가. 접수기간 : 2025. 6. 27.(금) ~ 7. 1.(화) 까지

나. 제출처 : 이메일 주소 [lkjasd91@korea.kr](mailto:lkjasd91@korea.kr)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는 원본을 순서대로(라. 제출서류 순서) 제출서류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1건의 파일(PDF양식만 인정함)로 첨부

※ 모집분야 중복신청 불가

다. 등록방법 : 붙임 문서 신청서(서식 1 ~ 3)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라. 제출서류

- 1) 공통 : 등록신청서, 보안각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서식 1 ~ 3)
- 2) 공무원, 대학교수,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전문기관 등 공공기관에 소속된 자 : 재직증명서
- 3) 그 외 모집분야와 응모자격 요건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1건의 **파일(PDF)**로 제출,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5. 평가위원 선정

가. 일 시 : 2025. 8. 중

나. 선정인원 : 총 7명(분야별 예비인원 각 1명 차순위 선정)

다. 선정방법 : 입찰참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천

※ 3배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후 입찰참가자 번호를 추천

※ 다빈도순으로 결정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라. 선정통보 : 선정된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연락

※ 평가위원 선정 후 3회 이상 고지하였으나 미응답 시 및 참여 불가 시 차순위 섭외

## 6.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정일시

가. 일 시 : 2025. 8. 중

나. 장 소 : 발주처의 사정에 의거 평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장소 포함 세부일정은 개별 통지함

## 7.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1) 개별 통지받은 신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봄

2) 제안서의 평가가 끝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해촉된 것으로 봄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평가위원 위촉자는 개별 통지하고, 평가위원으로 참석 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함

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서식1)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후보자 모집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전문(모집)분야는 후보자 공고문에 표시된 모집분야를 의미함

2) 직위(직급)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해당하면 체크하고 그 외는 기타에 정확히 기재

2) “학위”는 학사, 석사, 박사(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다만, 고졸 이하의 졸업자로서 평가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출신학교를 기재함

4) 경력사항의 경우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람

5) [서식1]은 기재란 부족 시 추가 가능. 단, [서식1]의 항목은 반드시 포함할 것

마. 기재사실이 허위사실로 발견될 경우 응모신청은 무효 처리됨

바.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사.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려서는 안되며 보안을 유지할 것. ※ 보안각서 참고

아.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여수시 문화유산과 (061-659-2105)로 문의

- 붙임 1. [서식1]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서식2] 보안각서 1부.  
3.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서식1]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전문(모집) 분야	
자택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휴대폰		
직장	직장명		직위(직급)	<input type="checkbox"/> 정교수 <input type="checkbox"/> 부교수 <input type="checkbox"/> 조교수 기타 _____ ※ 정확히 기재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최종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 서식 변경 가능. 단, 위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위와 같이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 옛 성터거리 조성사업 조형물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 .

작성자 : (인)

여수시장 귀하

# 보안각서

- 사업명 :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 옛 성터거리 조성사업 조형물 설계 및 제작·설치
- 발주부서 : 여수시 문화유산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안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 . .

위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여수시는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 옛 성터거리 조성사업 조형물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등의 후보자 응모신청서 기재사항
-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 옛 성터거리 조성사업 조형물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 ▶ 개인정보 3자 제공

- ▷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 옛 성터거리 조성사업 조형물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타 기관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 법령에 따르거나 수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을 경우

### ▶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 수집된 개인정보는 신청일로부터 제안서평가 마감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 거부 권리

-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후보자 모집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활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분납) 체납에 따라 납부 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 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6일

## 여 수 시 장

1. 공고제목 :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6. 27. ~ 2025. 7. 18. (21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 소	부과 대상	체납금액(원)	비고
윤*아	여수시 구봉길 41, 101동 205호(국동, 국동시영아파트)	여수시 소호동 1211	856,858	

### 5. 공시송달 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에 따른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자께서는 방문 및 전화문의를 통해 내용 확인 후 고지서(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상기 공고기간 종료 시 해당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6. 문의사항

- 여수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061-659-4049)

여수시 공고 제2025-1961호

##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 양식업 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양식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양식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2004	패류 양식	바닥식	8	화정 여자	2025.07.12. 2035.07.11.	여수시 어항단지로 **	(사)한국수산 업경영인여 수시연합회	11020 재개발
12005	패류 양식	바닥식	12	소라 복산	2025.07.12. 2035.07.11.	순천시 장평1길 **	이*근	11023 재개발
12006	패류 양식	수하식	8	경호 대경	2025.07.12. 2035.07.11.	여수시 여문2로 **	안*정의8	11026 재개발
12007	패류 양식	바닥식	4.6	화정 만월	2025.07.12. 2035.07.11.	여수시 화양면 마상길 **	김*신	11029 재개발
12008	패류 양식	수하식	10	돌산 굴전	2025.07.22. 2035.07.21.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굴전어촌계	11868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5. 06. 26.

여 수 시 장

##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를 납부의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1명

연번	성명	주 소	공시송달 사유
1	김창*	여수시 묘도*길 *-*	폐문부재

2. 공고기간: 2025. 6. 30. ~ 2025. 7. 15.(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묘도동 주민센터

4. 공고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장 송부 및 압류예고 통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30.

여 수 시 장(인)

## 공 시 송 달 공 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여수 오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6. 30.

여수시장

###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여수 오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오천동 일원
- 사업시행자 : 여수시
-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 2.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협의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2층  
한국부동산원 호남지역본부 공익보상부 (☎062-380-1005)
-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아래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 3.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여수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인께서는 채무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정당한 권리행사(보상금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등)를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각1부, 인감증명서(일반용) 1부,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부,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내역 표시), 예금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 체결 전 3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5. 공시송달 공고 대상

- 불임 공시송달 공고 조서 참조

## 공시송달(보상협의공고) 조서

■ 사업명 : 여수 오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 사업시행자 : 여주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명(명칭)	주소(등기)	성명(명칭)	주소(등기)	권리관계	
1	토지	전라남도 여주시 만흥동	6-3	6-12	임야	1,621	429	m <sup>2</sup>	중0기업진흥공단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151-11				
2	토지	전라남도 여주시 만흥동	6-3	6-13	임야	1,621	355	m <sup>2</sup>	중0기업진흥공단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151-11				
3	토지	전라남도 여주시 만흥동	562	562-5	전	180	19X350/3524	m <sup>2</sup>	이0섭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80번안길 11, 101동 1304호 (봉선동,한국아델리움아파트)	파0자주식회사대운상호저축은행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	가압류	
4	토지	전라남도 여주시 만흥동	562	562-5	전	180	19X705/3524	m <sup>2</sup>	한0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9번길 32, 10동 1101호 (송내동,우성아파트)				
5	토지	전라남도 여주시 만흥동	562	562-5	전	180	19X2469/3524	m <sup>2</sup>	한0호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1로 40, 2동 1407호 (연향동,금호아파트)	고0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압류	
6	토지										주0회사광양상호신용금고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908	가압류	
7	토지										중0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여수지점)	근저당권	
8	토지										파0자주식회사대운상호저축은행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	가압류	
9	토지										한0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신용지원3부)	가압류	
10	토지	전라남도 여주시 만흥동	576	576	답	34	34	m <sup>2</sup>	윤0섭	여주시 오천동 255				
11	토지	전라남도 여주시 만흥동	562-3	562-6	전	4	3X350/3524	m <sup>2</sup>	이0섭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80번안길 11, 101동 1304호 (봉선동,한국아델리움아파트)	파0자주식회사대운상호저축은행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	가압류	
12	토지	전라남도 여주시 만흥동	562-3	562-6	전	4	3X705/3524	m <sup>2</sup>	한0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9번길 32, 10동 1101호 (송내동,우성아파트)				
13	토지	전라남도 여주시 만흥동	562-3	562-6	전	4	3X2469/3524	m <sup>2</sup>	한0호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1로 40, 2동 1407호 (연향동,금호아파트)	고0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압류	
14	토지										주0회사광양상호신용금고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908	가압류	
15	토지										중0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여수지점)	근저당권	
16	토지										파0자주식회사대운상호저축은행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	가압류	
17	토지										한0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신용지원3부)	가압류	
18	토지	전라남도 여주시 만흥동	산35	산35-19	임야	9,259	1,436X27/1089	m <sup>2</sup>	김0희	전라남도 여주시 여서동 238 금호아파트 10-405				
19	토지	전라남도 여주시 만흥동	산35	산35-19	임야	9,259	1,436X990/1089	m <sup>2</sup>	여0지구함경도망향의동산보존회	전라남도 여주시 교동 677-2	전0덕	전라남도 여주시 이순신광장로 12-1 (교동)	대표자	
20	토지	전라남도 여주시 만흥동	산35	산35-19	임야	9,259	1,436X4/1089	m <sup>2</sup>	이0아	전라남도 여주시 동문로 16-3 (고소동)				

21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	산35-19	임야	9,259	1,436X4/1089	m <sup>2</sup>	이0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24, 104동 201호 (일산동,태영아파트)			
22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	산35-19	임야	9,259	1,436X18/1089	m <sup>2</sup>	이0승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로 78 (관문동)	재0법인한국장학재단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신암동)	가압류
23	토지										전0신용보증재단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여수지점)	가압류
24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7	산35-21	임야	1,794	80	m <sup>2</sup>	전0기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남2길 15 (중앙동)			
25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176	176-12	공장용지	3,296.8	4.9	m <sup>2</sup>	여0수산영어조합 법인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0(오천동)			
26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178	178-14	공장용지	3,305.7	7.3	m <sup>2</sup>	주0회사일정수산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94-4(오천동)	김0길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2로 26 (봉산동)	근저당권
27	토지										농0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륜역지점)	가압류
28	토지										농0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농협은행주식회사 센텀시티점)	가압류
29	토지										농0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센텀시티지점)	가압류
30	토지										농0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명륜역지점)	가압류
31	토지										수0은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광주첨단지점)	근저당권
32	토지										신0보증기금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여수지점)	가압류,가처분
33	토지										전0신용보증재단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여수지점)	가압류
34	토지										주0회사 에스비케이	부산광역시 서구 총무대로 181 420호(남부민동, 엘지마린타워)	가압류
35	토지										주0회사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근저당권
36	토지										주0회사아라움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06-16 (오천동)	근저당권
37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179	179-5	공장용지	3,163.6	8.3	m <sup>2</sup>	주0회사창대피엔 비	여수시 망양로 482-6(오천동, ㈜창대피엔비)	주0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여천지점)	근저당권
38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174-1	174-12	공장용지	4,909.6	3.9	m <sup>2</sup>	주0회사신흥제약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4-11(오천동)	주0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남부터미널기업금융센터)	근저당권
39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176-9	176-13	도로	2	0.8	m <sup>2</sup>	여0수산영어조합 법인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0(오천동)			
40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177-3	177-3	공장용지	826.5	1	m <sup>2</sup>	주0회사마메든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94-3(오천동)	주0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여천지점)	근저당권

41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178-10	178-16	공장용지	256.3	2.5X1/2	m <sup>2</sup>	김0숙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81, 시동 305호 (둔덕동,남해화학사택)				
42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178-10	178-16	공장용지	256.3	2.5X1/2	m <sup>2</sup>	이0희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북4길 7, 104동 2502호 (학동,e편한세상여수더퍼스트)				
43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178-11	178-17	도로	8.2	0.7X1/2	m <sup>2</sup>	김0숙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81, 시동 305호 (둔덕동,남해화학사택)				
44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178-11	178-17	도로	8.2	0.7X1/2	m <sup>2</sup>	이0희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북4길 7, 104동 2502호 (학동,e편한세상여수더퍼스트)				
45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178-3	178-15	공장용지	1,388.4	6.2X1/2	m <sup>2</sup>	김0숙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81, 시동 305호 (둔덕동,남해화학사택)				
46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178-3	178-15	공장용지	1,388.4	6.2X1/2	m <sup>2</sup>	이0희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북4길 7, 104동 2502호 (학동,e편한세상여수더퍼스트)				
47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179-1	179-6	공장용지	1,653	2.9	m <sup>2</sup>	주0회사창대피엔 비	여수시 망양로 482-6(오천동, ㈜창대피 엔비)	주0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 지로1가)(여천지점)	근저당권,지상권	
48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05-5	205-7	대	612	502	m <sup>2</sup>	윤0열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송보아파트 605 동 2404호				
49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05-6	205-6	도로	118	100	m <sup>2</sup>	윤0열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송보아파트 605 동 2404호				
50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05-6	205-8	도로	118	18	m <sup>2</sup>	윤0열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송보아파트 605 동 2404호				
51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07-2	207-4	도로	30	1	m <sup>2</sup>	윤0안	화순군 능주면 관명리 313				
52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08-1	208-6	수도용지	17	7	m <sup>2</sup>	미0기3		유0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08-6	토지대장상 소유자	
53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08-2	208-7	도로	96	4	m <sup>2</sup>	박0석	광주시 서구 양림동 102-168				
54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10-1	210-6	대	147	15	m <sup>2</sup>	최0수	전라남도 광양시 오류로 56, 1105호 (중 동,수하임1차)				
55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답	166	35	m <sup>2</sup>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오천동)				
56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7-1	237-9	답	354	60X91/393	m <sup>2</sup>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오천동)				
57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49-1	249-6	도로	52	1	m <sup>2</sup>	이0조	여수시 오천동 373-3				
58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49-3	249-7	도로	99	7	m <sup>2</sup>	이0수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로 135, 2동 304호 (금호동 826번지 송죽아파트)				
59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49-4	249-4	도로	1	1	m <sup>2</sup>	이0조	여수시 오천동 373-3				

## 공시송달(보상협의공고) 조서

■ 사업명 : 여수 오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 사업시행자 : 여수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면적 및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명(명칭)	주소(등기)	성명(명칭)	주소(등기)	권리관계	
1	일반건축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9-1	239-7	주택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건축물대장상 면적 : 71.31㎡)	71.31	71.31X1/2	㎡	김0부	전라남도 여수시 월내동 841				
2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주택	조적조 아스팔트싱글지붕 및 슬라브지붕 ((7.7*6.2)+(1.7*4.8)+(8.2*8.9)+(2.0*3.7))	136.28	136.28	㎡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오천동)				
3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가추	판넬조 판넬지붕(((4.5*2.0/2)*2))	9	9	㎡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4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야외화장실	조적조 콘크리트지붕(((2.9+1.6)*1.4/2))	3.15	3.15	㎡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5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비닐하우스	경량철골조 차광막((2.1*2.7))	5.67	5.67	㎡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6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버섯목	표고버섯 42EA	1	1	식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7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화단1	조적조((5.4*1.5))	8.1	8.1	㎡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8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화단2	조적조((11.9*1.1))	13.09	13.09	㎡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9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대문	철제, 조적조 문주포함 (L2.6*H2.2)	1	1	식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10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담장	조적조 (L71.3*H2.0)	1	1	식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11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바닥포장	콘크리트(((5.4*8.0/2))	21.6	21.6	㎡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12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보일러실	판넬조 판넬지붕((2.95*2.0))	5.9	5.9	㎡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13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계단	콘크리트 (W0.7*L7.1)	1	1	식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14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창고	콘크리트((0.7*2.6))	1.82	1.82	㎡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15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상수도	-	1	1	식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16	동산이전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분재	화분 등 일체포함	1	1	식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17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주택용계량기	56170063694	1	1	식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18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CCTV	3EA	1	1	식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19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컴프레서	서원	1	1	식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20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동백나무	R10*H2.0	4	4	주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21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향나무	R15*H2.5	8	8	주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22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영산홍	W1.0*H0.7	1	1	주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23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장미	R7*H2.3	1	1	주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24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철쭉	W0.8*H0.8	7	7	주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25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36-1	236-10	은목서	R12*H2.5	1	1	주	라0권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513				
26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5	5-1	울타리1	목재그물망 (L16.0*H1.2)	1	1	식	소0자미상(1)					
27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5	5-1	울타리2	목재그물망 (L16.0*H1.0)	1	1	식	소0자미상(1)					
28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5	5-1	울타리3	목재그물망 (L12.0*H0.8)	1	1	식	소0자미상(1)					
29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5	5-1	계사	샌드위치판넬조((2.1*1.6))	3.36	3.36	㎡	소0자미상(1)					
30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5	5-1	컨테이너	((3*4))	12	12	㎡	소0자미상(1)					
31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5	5-1	석류나무	R12*H2.3	2	2	주	소0자미상(1)					
32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5	5-1	복숭아나무1	R3*H1.0	1	1	주	소0자미상(1)					
33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5	5-1	복숭아나무2	R8*H1.6	5	5	주	소0자미상(1)					
34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5	5-1	복숭아나무3	R6*H1.0	1	1	주	소0자미상(1)					
35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5	5-1	복숭아나무4	R2*H0.8	2	2	주	소0자미상(1)					
36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5	5-1	대추나무	R10*H1.8	1	1	주	소0자미상(1)					
37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06-4	206-15	주택1	블럭조 슬레이트 일부기와지붕((6*4.2))	25.2	25.2	㎡	소0자미상(12)					
38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06-4	206-15	창고	블럭조 지붕 유실((1.0*1.0))	1	1	㎡	소0자미상(12)					
39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06-4	206-15	담장1	블럭조 (L13.2*H1.5)	1	1	식	소0자미상(12)					
40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06-4	206-15	가추(창고)	블럭조 슬레이트지붕((1.6*3.8))	6.08	6.08	㎡	소0자미상(12)					

41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06-4	206-15	대문	콘크리트 문주포함 ((2.0*1.0)*2)	1	1	식	소0자미상(12)				
42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06-4	206-15	무궁화나무	R15*H2.5	1	1	주	소0자미상(12)				
43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06-4	206-15	무궁화나무2	R4*H1.5	1	1	주	소0자미상(12)				
44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11-7	211-7	무궁화나무1	R20*H2.3	2	2	주	소0자미상(14)				
45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11-7	211-7	무궁화나무2	R10*H1.8	9	9	주	소0자미상(14)				
46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11-7	211-7	울타리	그물망 철지주대포함 (L29.0*H1.2)	1	1	식	소0자미상(14)				
47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11-7	211-7	사과나무	R6*H2.0	1	1	주	소0자미상(14)				
48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11-7	211-7	사철나무	L3.8*H2.5	2	2	주	소0자미상(14)				
49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12	12	컨테이너	3.0*6.0	1	1	식	소0자미상(2)				
50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565	565-2	차양	경량철골, 샌드위치판넬지붕((10.0*4.0))	40	40	m <sup>2</sup>	소0자미상(3)				
51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565	565-2	cctv	설비등 일체포함	1	1	식	소0자미상(3)				
52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565	565-2	바닥포장	시멘트조((2.6*7.5))	19.5	19.5	m <sup>2</sup>	소0자미상(3)				
53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565	565-2	현장사무실	조적조 시멘트마감(8.3*4.7))	39.01	39.01	m <sup>2</sup>	소0자미상(3)				
54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567	567-3	차양	철골조 강판지붕((4.8*22.5))	108	108	m <sup>2</sup>	소0자미상(4)				
55	동산이전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567	567-3	동산이전	자재등 일체포함	1	1	식	소0자미상(4)				
56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567	567-3	울타리	목재 그물망 (L39.0*H1.2)	1	1	식	소0자미상(4)				
57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7-2	7-10	울타리	철파이프조 (L34.0*H1.8)	1	1	식	소0자미상(6)				
58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7-2	7-10	배수로	시멘트조 (L34.0*W0.6)	1	1	식	소0자미상(6)				
59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7-2	7-10	사철나무	R20*H2.5	1	1	주	소0자미상(6)				
60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7-2	7-10	무궁화나무	R10*H2.0	1	1	주	소0자미상(6)				
61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1457-2	1457-7	바닥포장	콘크리트조(편입면적 전체)	11	11	m <sup>2</sup>	소0자미상(7)				
62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1457-3	1457-3	바닥포장	콘크리트조(편입면적 전체)	2	2	m <sup>2</sup>	소0자미상(8)				
63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562-3	562-6	바닥포장	콘크리트조(편입면적 전체)	4	4	m <sup>2</sup>	소0자미상(9)				
64	일반건축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05-5	205-7	다가구주택 1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등기상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다가구주택 1동)(건축물대장상 면적 : 36.72m <sup>2</sup> )	36.72	36.72	m <sup>2</sup>	윤0월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송보 아파트 605동 2404호			
65	일반건축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05-5	205-7	다가구주택 2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등기상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다가구주택 2동)(건축물대장상 면적 : 36.72m <sup>2</sup> )	36.72	36.72	m <sup>2</sup>	윤0월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송보 아파트 605동 2404호			
66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05-5	205-7	발코니1	목조((10.2*1.3))	13.26	13.26	m <sup>2</sup>	윤0월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송보 아파트 605동 2404호			
67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05-5	205-7	발코니2	목조((10.2*1.3))	13.26	13.26	m <sup>2</sup>	윤0월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송보 아파트 605동 2404호			
68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05-5	205-7	진입로 바닥포장	콘크리트((5.0*22.1))	110.5	110.5	m <sup>2</sup>	윤0월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송보 아파트 605동 2404호			
69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05-5	205-7	창고	판넬조 판넬지붕(((3.0*4.8)-(1.2*2.4)/2))	12.96	12.96	m <sup>2</sup>	윤0월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송보 아파트 605동 2404호			
70	일반건축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7	7-5	공장1(주12)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마감 (13.0*11.0),구이실(8.0*3.2) 포함 (등기상 : 다동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창고))(건축물대장상 면적 : 143m <sup>2</sup> )	143	143	m <sup>2</sup>	해0식품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57(만흥동)			
71	일반건축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7	7-5	냉동창고1(주13)	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12.0*2.4) (등기상 : 에프동 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 공장(냉동창고))(건축물대장상 면적 : 28.8m <sup>2</sup> )	28.8	28.8	m <sup>2</sup>	해0식품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57(만흥동)			
72	일반건축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7	7	냉동창고2(주14)	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12.0*2.4) (등기상 : 에이치동 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 공장(냉동창고))(건축물대장상 면적 : 28.8m <sup>2</sup> )	28.8	28.8	m <sup>2</sup>	해0식품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57(만흥동)			
73	일반건축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7	7	냉동창고3(주15)	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등기상 : 지동 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 공장(냉동창고))(건축물대장상 면적 : 28.8m <sup>2</sup> )	28.8	28.8	m <sup>2</sup>	해0식품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57(만흥동)			
74	일반건축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7	7-5	공장2(주3)	철파이프조 슬레이트 지붕 샌드위치판넬마감 (등기상 : 철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작업장)(건축물대장상 면적 : 375.53m <sup>2</sup> )	375.53	375.53	m <sup>2</sup>	해0식품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57(만흥동)			
75	일반건축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7	7-5	물치장(부1)	시멘트 블럭조 (등기상 :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광)(건축물대장상 면적 : 11.25m <sup>2</sup> )	11.25	11.25	m <sup>2</sup>	해0식품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57(만흥동)			
76	일반건축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7	7-5	공장3(주1)	경량철골조 슬레이트지붕 샌드위치판넬 및 강판지붕 (등기상 : 경량철골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작업장)(건축물대장상 면적 : 552.49m <sup>2</sup> )	552.49	552.49	m <sup>2</sup>	해0식품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457(만흥동)			

77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계단(철제)	W1.8*1.3.3	1	1	식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78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계단(화강석)	W1.8*1.2.0	1	1	식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79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바닥포장	화강석((3.9*6.7))	26.13	26.13	m <sup>2</sup>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80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비석1(추진위원)	화강석 (0.75*0.5*H0.68)	1	1	식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81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비석2(공적비, 조응수)	오석(0.91*0.18*H0.77), 화강석 좌대 (1.12*0.4*H0.55) 포함	1	1	식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82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비석3(협찬금)	오석(0.91*0.18*H0.77), 화강석 좌대 (1.12*0.4*H0.55) 포함	1	1	식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83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비석4(도민회원)	화강석 (0.75*0.5*H0.68)	1	1	식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84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비석5(표지석)	자연석 (3*1.15*H1.05), 화강석 좌대 포함	1	1	식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85	공작물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석축	견치석 (15*2)+(10*1.2)	1	1	식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86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영산홍울타리	L39.4*H0.8	1	1	식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87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영산홍	W4.3*H2.0	1	1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88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동백나무1	R10*H4.2	23	23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89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동백나무2	R13*H4.5	4	4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90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종려나무	R13*H4.5	62	62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91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광나무	R13*H4.0	43	43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92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동백나무3	R8*H2.2	5	5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93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금목서	R13*H2.3	1	1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94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팔손이	R8*H1.5	6	6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95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홍가시나무	R18*H3.0	2	2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96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동백(두절)나무	R8*H1.3	2	2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97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동백나무4	R15~20*H4.0~4.5	59	59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98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금목서2	R18*H4.5	4	4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99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피라칸타	R13*H3.5	5	5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100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향나무	R42*H6.0	1	1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101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편백나무	R18*H4.0	1	1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102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광나무(두절)	R11*H1.2	2	2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103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광나무2	R21*H4.0	4	4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104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무궁화나무1	R20*H3.5	1	1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105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무궁화나무2	R8*H2.5	3	3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106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사스레피나무	R8*H3.2	1	1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107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느릅나무	R15*H5.5	1	1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108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베롱나무	R5*H2.5	15	15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109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벚나무	H5.0-6.0 R30-40	25	25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110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동백나무5	H2.0-3.0 R10-15	44	44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111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종려나무2	H1.5-2.5 R15-20	24	24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112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35-12	산35-22	단풍나무	H3.5-4.5 R15-25	20	20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113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170-7	170-7	종려나무	R13~18*H4.5	4	4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114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913-14	913-26	종려나무	R13~18*H4.5	11	11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115	수목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산185-2	산185-2	종려나무	R13~18*H4.5	33	33	주	전0덕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 로 12-1 (교동)			

## 여수시 유촌항 어촌뉴딜300 사무장 채용 희망자 모집 (재)공고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유촌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단위의 거버넌스 협의체 등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며, 지역주민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자 사무장 채용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2025년 6월 30일

### 여 수 시 장

#### 1. 모집현황

대 상 사 업	채용기간	채용인원	급여조건	비 고
유촌항 어촌뉴딜300사업	6개월간 협약체결	1명	월180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포함)	

#### 2. 희망자 자격요건

- 채용대상자는 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어촌지역개발관련 분야에 경험과 관련지식을 갖춘 자로서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의지가 높으며, 다음 요건에 적합한 자.
  - 행정능력 등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자
  - 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주민과 원만한 관계 유지가 가능한 자
  -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자

-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어촌지역개발에 의지가 강한 자
-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삼산면 거문도 지역인 주민으로 제한
- ※ 다만, 지원대상 마을 및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어업은 겸직 가능
- ※ 마을 대표의 직계비속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 홈페이지 등 컴퓨터 활용할 수 없는 자는 제외

### 3. 사무장의 주요담당업무

- 지역단위의 거버넌스 협의체 관련 업무전담 수행
  - 법인결성관련 등 지역 공동 추진업무
  - 회의 개최 및 운영 등 각종 회의록 작성 등 업무 전반
- 주민공동 이용시설 등 추진관련 주민자부담, 운영관리방안 업무
- 지역 고유 브랜드개발, 홍보, 마케팅,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견학 등 주민들이 추진해야할 지역역량강화(S/W) 관련 업무
-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협의체, 자문단, 지원단 등 관련전문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
- 협의체 등 분야별 조직화 및 운영지원
  - 협의체를 중심으로 분야별 소그룹단위로 조직화하여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등
  - 지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 등
  - 운용에 따른 회계, 문서 등 권역 사무관리 추진
  - ※ 사무장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와 사무장과 협의하여 정함

### 4. 제출서류

- 사무장 채용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채용희망마을 현지방문을 실시한 후, 공모신청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자격증, 주민등록초본 등)를 첨부하여 제출
  -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

5. 채용대상자의 선정

- 여수시 및 협의체 협의를 거친 선발절차에 의거하여 사무장 채용이 적합한 자를 선정
- 시장·(위탁시행자), 협의체와 사무장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6. 채용일정

- 채용신청서 교부 및 접수
  - 1차 서류접수기간: 2025. 7. 4(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 모두 당일 도착분에 한함)
  - 2차 면접: 2025. 7. 7(월) 14:00 여수시 국동임시별관청사 2층 회의실  
(면접일정 및 장소는 날씨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7. 지원서 접수처 : 여수시 섬발전지원과/어촌신활력팀

▣ 문의 여수시 섬발전지원과(어촌신활력팀) 담당 김용환 (TEL.061.659-2287)

<별첨1>

사진 (3.0*4.0cm)	이 력 서			
	성	한글		주민등록번호
	명	한문		-
	연락처		E-mail	
현 주소				
학 력 사 항				
기 간	학교명(고교이상)	전 공	수 료	졸 업
~				
~				
~				
경 력 사 항				
기 간	근무처(부 서)	직 위	업무내용	비 고
~				
~				
~				
~				
~				
자 격 에 관 한 사 항				
취 득 년 월 일	자격·면허증	시 행 처	비 고	
주민위원장 또는 소득법인 대표의 직계비속 해당 여부		○ , X		
위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 ※ 작성요령

- ① 나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 ② 학력(전공) : 졸업년도 및 전공 등을 기재하되, 고등학교부터 기재  
(예시 : ○○학교 ○○대학 ○○과(전공) ○○년도 졸업)
- ③ 채용희망권역 : 희망권역의 권역명을 기재
- ④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지원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⑤ 직무수행계획(요약)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별첨의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⑥ 주요경력 :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년, 월을 표기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 등도 포함하여 기재

- ⑦ 기타 특이사항 : 지원하는 권역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 공 고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 여 수 시 장

###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대상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법령과 일치하도록 시장의 책무 신설 및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추가(안 제4조)
-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 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곳을 제외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6조)
-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장비 대여 조항 신설(안 제7조)
- 민간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개선 및 개방시간 범위 명시(안 제14조)

- 유료화장실의 민원처리 절차 개선내용 현행화(안 제18조)
-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른 조문 등 정비  
(안 제5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7조)

### 3.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4. 입법예고기간 : 2025. 7. 1. ~ 2025. 7. 21. (20일간)

### 5.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기후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화

#### 다. 의견제출할 곳

1) 주소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여수시청 기후생태과 / 우 59689

2) 전화 : 061-659-3821 / 팩스 : 061-659-5823

### 6. 그 밖의 사항

전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기후생태과 수질관리팀(☎ 061-659-38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 **붙임 1** 전부개정조례안

---

여수시 조례 제 호

###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대변기 칸막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3. “비상벨(안심벨을 포함한다)”이란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시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 내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7조(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성인지 교육도 포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1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4. 비상벨 이상 유무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제12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3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4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 남녀 공용인 화장실, 이용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자나 고객이 대부분인 시설의 화장실과 시설물 노후로 인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어려운 화장실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의 화장실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公衆)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실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公衆)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 ①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公衆)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간이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 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8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

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9조(준수사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2.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유료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금지행위는 법 제14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를 피우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3.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4.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호와 같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별표 제1호】

##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 서식】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 년도			관리책임 공무원		소 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b>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b>									
대 표 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p>『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b>여 수 시 장</b>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인</span></p>									

# 여수시 관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계획 공고

전라남도에서 도내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에 따라, 종전에 공익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코자 다음과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 6. 30.

## 여 수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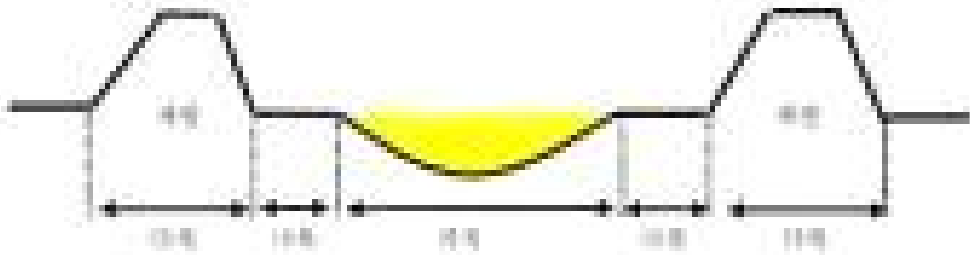
### □ 보상근거

-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 □ 보상방침

- 보상대상

가. 여수시 관내 지방하천 중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토지 중 가·나·다목 토지



나. 공익사업 시행 여부를 알 수 없는 지방하천 편입토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1) 소송에서 도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 2)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하여 도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토지
  - 하천기본계획 수립 이후 기본계획에 따라 완성 제방이 형성된 토지
  - \* 과거 항공사진 등 하천 선형 변경 및 제방 축조가 확인한 토지

○ 보상방법: 시·군 조사 및 개별 신청에 따라 미지급용지 수요조사 후 예산범위 내 보상 대상지를 선정, 연차적 보상 추진

○ 보상절차



○ 보상순위

- ① 소송에서 패소한 미지급 용지
- ② 공익사업 시행 후 미지급된 용지 중 보상 신청한 토지

○ 보상사업 대상자 확정 시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 및 보상 협의

## □ 보상금액 산정

○ 시에서 편입토지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액 산정

## □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서 접수

○ 접수기한: 2025. 7. 29.(화) 18:00까지

○ 제출방법: 토지 소유주에 한하여 보상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붙임1 참조)

○ 접수처: 전남 여수시 시청로1 (학동) 여수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061-659-4040)



## 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5년 6월 30일

### 여 수 시 장

1.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2. 신청서 접수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25. 7. 2.(수) ~ 2025. 7. 31.(목)

나. 접수장소 : 여수시청 건축과 ※ 읍·면·동장 경유(확인)하여 제출

다. 접수방법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제출

※ 의무관리 대상 단지가 아닌 소규모 단지는 입주자 내부 회의를 거쳐 제출

3. 지원 대상

가. 사용검사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15개 항목 모두 신청 가능

※ 12년이 경과하지 않는 공동주택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4개 항목)신청 가능

4. 지원 제외 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 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로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

라.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시설

마.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바.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 지역주택조합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다만,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아.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 4. 대상 및 지원조건

- 가. 1단지 공동주택에 3개 이내 사업 지원
- 나. 보조금 지원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 불가
  - ※ 2024년 이후 지원받은 단지부터 적용(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 불가)
- 다.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 5. 지원사업 종류

##### 가. 공동체 활성화 분야(4개)

- 1)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 2) 주민 쉼터 설치 및 보수
- 3)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 4)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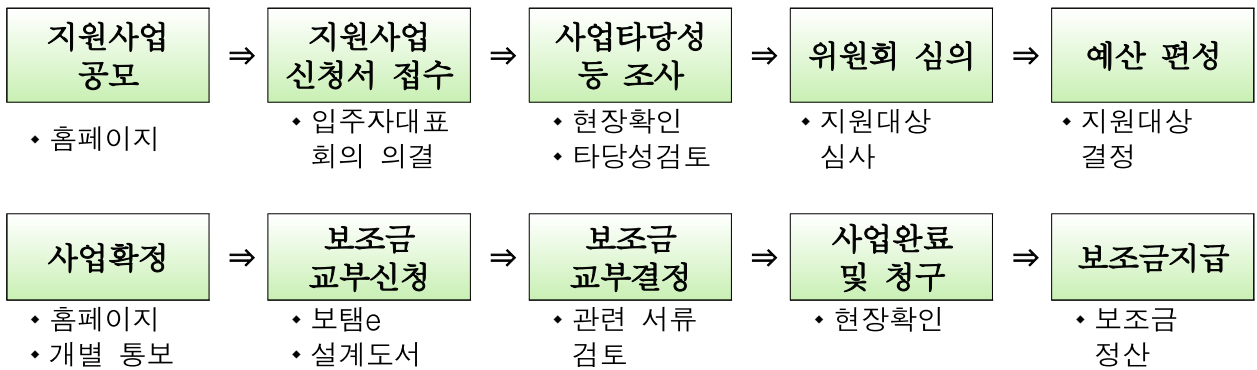
##### 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10개)

- 1) 단지 내 도로 보수
- 2)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보수
- 3)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승강기 보수
- 4) 옥외 상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 5)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개선
- 6)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와 관련된 시설 설치·개선

- 7)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증강
- 8) 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 9)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보관을 위한 생활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친환경시설 및 택배물품 보관시설의 설치·개선
- 10)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개량에 관한 사업으로서 여수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6. 지원 절차**



**7. 지원사업 결정**

- 가. 사업의 종류, 과거 지원 실적, 단지 노후도, 평균 전용면적, 세대수, 시정 참여도, 중복수혜 빈도, 사업 타당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 나.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사업비 등이 조정·변경될 수 있음

**8.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가. 신청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가 신청
- 나. 구비서류

- 1)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제1호 서식)
- 2) 사업계획서 1부(제2호 서식)
- 3) 사업의 성실 추진 서약서 1부(제3호 서식)
- 4)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체평가서 및 근거 서류
- 5)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등)
- 6) 사업비 산출 근거(견적서 또는 설계서)

## 9. 기타 유의사항

- 가.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내용 및 제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나. 지원단지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을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단지 결정을 취소합니다.
- 다. 접수 기간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 수정, 보완 등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라.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에 따라 처리됩니다.
-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건축과(☎061-659-4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1. 6. 30.>

##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85㎡이하	85㎡이상
준공연도				

###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 : 천원)			사업기간	
	총 계	지원신청액	자부담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 리 사 무 소 장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사업비 산출 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자부담 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등), 사업의 성실 추진 서약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 업 계 획 서 (지원신청)						
1.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 업 비 (단위:천원)	합 계	지원신청액	자 부 담	자부담률(%)	
2. 사 업 내 용	○ ○					
3. 사 업 비 산 출 기 초	○ 별지 작성 가능					
4. 보조금 조달 계 획	부 담 자 명					
	부담자 주소					
	부 담 금 액					
	부 담 방 법					
5. 보조사업효과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7. 이 전 보조사업 실적	사 업 명				지원연도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자 부 담	천원
	사업효과					

## 사 업 의 성 실 추 진 서 약 서

위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선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지원사업으로 선정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 리 사 무 소 장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체 평가서(조례 제4조제2항 관련)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 점	자체평가
관 리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의무)</li> </ul>	여 5 부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의무)</li> </ul>	여 5 부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선정 시 경쟁 입찰 도입 여부(의무)</li> </ul>	여 5 부 0	
시책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의무)</li> </ul>	여 5 부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li> </ul>	여 5 부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비원 업무 협약 체결(의무)</li> </ul>	여 5 부 0	
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수선계획에 당해 사업 반영 여부</li> </ul>	여 0 부 x	

※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관리의 투명성, 시책이행 평가항목 중 (의무)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여” 로 평가한다.

※ 증빙 서류 미제출 시 배점 제외됨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 공 고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 여 수 시 장

###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효율적인 시설운동을 위한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정비
-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자 확대와 수강료 등 반환 사유 및 적용 법률 변경

#### 2. 주요 내용

- (안 제4조제1항제6호) 시설 사용 허가시 공익성 확보
- (안 제10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
- (안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사유 현실화 및 적용 법률 변경
- (안 제14조) 인용 조례 중 조례명이 바뀐 조례명 변경

####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5. 입법예고기간 : 2025. 7. 1. ~ 2025. 7. 21.(21일간)

####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년 7월 21일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제출기관 : 여수시장(여성가족과)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 여성가족과
  - 팩 스 : 061-659-4166
  - 전자메일 : gewo8391@korea.kr

#### 7.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여성가족과(☎ 061-659-41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

여수시 조례 제 호

###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여성문화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중”을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자가”를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교육수강 등을 위해”를 “교육수강 또는 공익성을 고려 하여”로 한다.

제8조 중 “전대하지 못한다”를 “대여할 수 없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회관내”를 “회관 내”로 한다.

제10조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세대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주부
10. 「여수시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3의 수강료 반환기준”을 “수강을 취소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해당 기준”으로 한다.

1. 시설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14조 중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예에”를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의 예에”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개정안]

## 수 강 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기술교육	1인1과목 1개월	15,000	
취미교육	1인1과목 1개월	10,000	
교양강좌	-	무 료	
유아수탁실	수강생의 교육시간 내	무 료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여성문화회관의 <u>관리운영</u>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제1조(목적) ----- ----- <u>관리·운영</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여성문화회관의 사용”이란 <u>제1호의 시설중</u> 일부를 이용하여 각종 회의, 행사, 전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사용”이란 <u>제1호의 시설 중</u> ----- -----
3.·4. (생략) 제3조(사용허가) ① (생략) ②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	3.·4.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u>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u> ----- -----
제4조(사용제한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6. 그 밖에 시장이 <u>교육수강 등</u> 을 위해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②·③ (생략)	제4조(사용제한 등) ①----- ----- 6. ----- <u>교육수강 또는 공익성을 고려하여</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허가받은	제8조(사용권의 양도금지) -----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① (생략)

②시장은 사용료 및 수강료 요  
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회관내 일정한 장소에 상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신설>

<신설>

<신설>

8. (생략)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될 때는 징수한

1. 시설의 고장 및 우천으로 사  
용이 불가능할 때

-----  
대여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 징수) ① (현행과 같  
음)

②-----  
-----  
회관 내 -----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  
-----  
-----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세  
대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  
른 다문화가족 주부

10. 「여수시 장기 등·인체조  
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11.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  
-----

1. 시설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  
용이 취소되거나 불가능한 경  
우

2.·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3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금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예에

2.·3. (현행과 같음)

② -----  
----- 수강을 취소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해당 기준-----  
-----  
-----  
-----  
-----  
-----  
-----  
-----  
-----  
-----.

제12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범위 안-----  
-----.

제14조(준용) -----  
-----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의 예에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에이치제이디오션리조트(주) 양만진에서 시행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 6. 30.

### 여 수 시 장

- 사 업 명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 에이치제이디오션리조트(주) 양만진
- 열람기간 : 2025. 7. 1. ~ 2025. 7. 16.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여수시청 산업지원과(시청동 1길 23) (☎ 061-659-3382)
- 의견제출기간 : 2025. 7. 1. ~ 2025. 7. 16.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붙임 조서 참조
  - 토지소유자 : 붙임 조서 참조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붙임 조서 참조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토지)

No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보상금액 (토지)	지장물	영농	총 금액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구분	이름	주소	
	합계			4,522.0	683,274,500	18,815,000	13,282,000	715,371,500						
1	장수리	102	전	13	1,943,500		44,000	1,987,500	김*진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45, 108동 ***호(화명동, 대우이안)				
2	장수리	102-7	전	155	23,172,500		534,000	23,706,500	김*진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45, 108동 ***호(화명동, 대우이안)				
3	장수리	102-9	전	103	17,510,000		355,000	17,865,000	김*진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45, 108동 ***호(화명동, 대우이안)				
4	장수리	175	전	114	13,908,000		393,000	14,301,000	박*만	여수시 화양면 장수로 160-*				
5	장수리	177-1	도	95	4,512,500			4,512,500	김*빈	여수시 화양면 장수로 146-*				
6	장수리	183-1	임	404	57,974,000	3,820,000		61,794,000	김*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282, 18동 ***호(둔산동, 수정타운)				
7	장수리	183-2	전	1,211	178,830,000	1,605,000	4,176,000	184,611,000	김*덕	여수시 새터로 91-*(신기동)				
					67,009,000			67,009,000	강*웅	여수시 신월로 561-8, 3동 12**호(신월동, 금호아파트)				
8	장수리	187	전	675	97,875,000	8,630,000	2,328,000	108,833,000	정*진	여수시 학동북4길 7, 105동 17**호(학동, e편한세상여수더퍼스트)				
9	장수리	189	전	869	112,535,500	500,000	2,997,000	116,032,500	김*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251번길 27, 512동 18**호 (신창동, 신창5차 호반베르디움아파트)				
10	장수리	257	전	712	96,120,000	4,260,000	2,455,000	102,835,000	김*빈	여수시 허문정1길 18, 3-13***(문수동, 흥화아파트)				
11	장수리	산63	임	171	11,884,500			11,884,500	박*래	여수시 소라면 상세동길 **				

## 공 고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 여 수 시 장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효율적인 시설운동을 위한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정비
- 수강신청 대상자 확대와 신청방법 정비, 사용료 감면 절차 등 현실화 강사의 위촉심사 및 배점 기준 등 재정비

### 2. 주요 내용

- (안 제2조) 프로그램 과목 포괄적 명시, 유아실 미운영에 따른 항목 삭제, 과목 폐지 조건 조정
- (안 제3조) 수강신청 대상 확대 및 신청방법 정비
- (안 제5조) 사용료 감면절차 등 현행화
- (안 제8조, 제9조) 강사 모집 절차 및 위촉심사 및 배점기준 정비
- (안 제10조) 강사 위촉 구비서류 정비

3. 개정규칙안 : 붙임 1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5. 입법예고기간 : 2025. 7. 1. ~ 2025. 7. 21.(21일간)

##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년 7월 21일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제출기관 : 여수시장(여성가족과)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 여성가족과
  - 팩 스 : 061-659-4166
  - 전자메일 : gewo8391@korea.kr

## 7.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여성가족과(☎ 061-659-41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 붙임 1 일부개정 규칙안

---

여수시 조례 제 호

###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업, 창업 지원 기술교육
2. 취미, 건강교육
3. 문화, 교양교육
4. 대강당, 소강당 등 대관

제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시정 시책 및 교육수요 등에 따라 교육과목을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매기별 신청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70%에 미달할 경우 과목을 폐지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9. 12. 31)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여성”을 “주민”으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를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0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거나 감면 증빙자료를 통합예약시스템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를 “(수강권의 양도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관의 시설 사용허가 및 수강(이용)증”을 “수강권”으로, “승인없”을 “승인 없”으로, “전대하지 못한다”를 “대여할 수 없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회관운영상”을 “회관 운영상”으로, “구분없”을 “구분 없”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강사위촉 심사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강사를 초빙 위촉함에 있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위촉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당해연도 교육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종료시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강사의 자격기준) 각 교육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직업훈련 교사로서 자격과 강의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과정별 전문 강사
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경력증명서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와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안]

강사 등 위촉 심사 배점기준

개정 전		개정 후	
구분	배점기준	구분	배점기준
학 력 (10%)	1. 대학원졸이상 : 10점 2. 대졸이상 : 8점 3. 전문대졸 : 6점 4. 고졸이상 : 4점 5. 중졸이상 : 2점	전공 적합성 (10%)	1. 응시분야 관련전공 졸업 : 10점 2. 응시분야 관련 비전공 : 5점
강의경력 (20%)	1. 8년이상 : 20점 2. 6년이상 8년미만 : 18점 3. 4년이상 6년미만 : 16점 4. 2년이상 4년미만 : 14점 5. 1년이상 2년미만 : 12점 6. 6월이상 1년미만 : 10점	관련분야 강의경력 (20%)	1. 5년이상 : 20점 2. 3년이상 5년미만 : 18점 3. 1년이상 3년미만 : 16점 4. 1년 미만 : 14점
관련분야 강의자격 (30%)	1. 대학부교수(전문대학교수)이상, 직업훈련교사 1급 : 30점 2. 대학전임강사(전문대학조교수) 이상, 직업훈련교사 2급 : 27점 3. 중등학교교사(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직업훈련교사 3급 : 24점 4. 실기교사,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그 밖에 강의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인증서 : 21점	관련분야 강의능력 (20%)	1. 대학부교수(전문대학교수)이상 : 20점 2. 대학전임강사(전문대학조교수), 직업훈련교사 1급, 기술사, 기능장 : 17점 3. 전문대학 강사 이상, 직업훈련교사 2급, 산업기사, 기사 : 14점 4. 실기교사,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그 밖에 강의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인증서 : 11점
자격증 소지자 (20%)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1. 기술사, 기능장 등 : 20점 2. 기사 1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증 : 18점 3. 기사 2급, 기능사 1급, 능력평가 1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증 : 16점 4. 기능사 2급, 능력평가 2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증 : 14점	사회봉사 활동 (10%)	○ 전년도 1. 봉사활동실적 50시간 이상자 : 10점 2. 봉사활동실적 30시간 이상자 : 8점 3. 봉사활동실적 10시간 이상자 : 6점 4. 봉사활동실적 1~10시간 미만자 : 4점
사회봉사 활동 (10%)	1. 선행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선도위원으로 장관이상 위촉 또는 시장표창 이상(최근 3년 이내), 전년도 봉사활동실적 40시간 이상자 : 10점 2. 전년도 봉사활동실적 30시간 이상자 : 8점 3. 전년도 봉사활동실적 20시간 이상자 : 6점 4. 전년도 봉사활동실적 10시간 이상자 : 4점 5. 전년도 봉사활동실적 10시간 미만자 : 2점	강사지원서 (10%)	○ 지원동기 및 활동 계획, 본인이 생각하는 강사상, 내용 작성에 대한 성실성, 적합성, 수상 및 연구실적 등 포함 1. 내용 평가 상 : 8~ 10점 2. 내용 평가 중 : 5 ~ 7점 3. 내용 평가 하 : 1 ~ 4점
국가기관 , 공공단체 근무경력 (5%)	1. 2년이상 : 5점 2. 1년이상 2년미만 : 4점 3. 6월이상 1년미만 : 3점	강의계획 서 (10%)	○ 강의목표 및 방향, 주차별 계획 관련 강의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창의성, 충실도 등 1. 내용 평가 상 : 8~ 10점 2. 내용 평가 중 : 5 ~ 7점 3. 내용 평가 하 : 1 ~ 4점
수상경 력 (5%)	○ 전국단위 : 5점, 도단위 : 4점, 시단위 : 3점 ※ 수상경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공인대회에 한함.	면접 (20%)	○ 강사로서 자질, 협업 및 위기상황 대처능력, 성실도 및 도덕성, 시정관심도 등

[별표 2] <삭 제>

**강사 등 위촉 심사표**

과목명 :

구분	개인별평점 배점	개 인 별 평 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계	100점					
학 력	10					
관련분야 강의자격	30					
강의경력	20					
자격증소지자	20					
사회봉사활동	10					
국가기관, 공공 단체 근무경력	5					
수상경력	5					

<b>여성문화회관 수강신청서</b>					처리기간
					즉 사
접수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여수시 읍면 리 번지 동 ㉠ 동 호			전화번호	
신청과목				차량번호	
수 강 료	— 일 금 — 원 정 — 감 면				
감면사유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 음		감면 여부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b>여 수 시 장 귀하</b>					
----- 절 취 선 -----					
<b>수강신청 접수증</b>					
접수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청과목					
교육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개월)				
개강식안내	— 년 월 일 : (시 분까지 입장원료)				
	장 소 : —				
수 강 료	— 일 금 — 원 정 — 감 면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 년 월 일 <b>여 수 시 장</b>					

[별지 제7호 서식] <삭 제>

여성 문화 회 관 수 강 신 청 접 수 대 장

결재			접수 번호	접수 년월일	신청자			수강과목	구분	수강료 (원)	비고
과장	담당주사	담당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사업) ①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p> <p>1. <u>기술교육 : 미용, 양재, 한복, 제과, 조리(요리), 자수, 컴퓨터, 기타 필요한 교육</u></p> <p>2. <u>취미교육 : 공예, 원예, 서예, 꽃꽂이, 동양화, 서양화, 한국 무용, 한글, 외국어, 사진(비디오), 문예창작, 수지침, 스포츠, 노래교실, 요가, 건강관리, 기타 필요한 과목</u></p> <p>3. <u>교양교육 : 경제, 사회, 문화, 생활예절, 자녀 및 주부교육, 생활법률 등</u></p> <p>4. <u>유아실 : 교육 및 수강생 자녀중 아동(3세 이상부터 취학전 아동)을 일시보호</u></p> <p>5. <u>시설운영 : 사무실, 대강당, 소강당, 기타시설 등</u></p> <p>② 제1항의 교육사업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u>교육과목의 전부 또는 일</u></p>	<p>제2조(사업) ①----- ----- -----.</p> <p>1. <u>취업, 창업 지원 기술교육</u></p> <p>2. <u>취미, 건강교육</u></p> <p>3. <u>문화, 교양교육</u></p> <p>4. <u>대강당, 소강당 등 대관</u></p> <p>&lt;삭 제&gt;</p> <p>② <u>시장은 시정 시책 및 교육수요 등에 따라 교육과목을 신설 또는 폐지 할 수 있으며, 매기별</u></p>

부를 변경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9. 12. 31)

1. 2. (생략)

제3조(사용 및 수강신청) ①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다.

1. (생략)

2. 교육 수강 신청자에 대해서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수강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성에 대하여 일정 범위에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생략)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감면

신청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70%에 미달할 경우 과목을 폐지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9. 12. 31)

1. 2.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 및 수강신청)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주민-----  
-----  
-----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한다. <단서 삭제>

3.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0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거나 감면 증빙자료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시행이전에 여성문화회관 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얻어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여성문화회관 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같음 한다.

제6조(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시설 사용허가 및 수강(이용)증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7조(사용시간) ① (생략)  
②시장은 회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 구분없이 운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조(강사위촉) ① (생략)  
②위촉기간은 신규 위촉자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하고 재위촉자의 경우 교육과정별로 위촉한다.(전부개정 2009. 12. 31)

<신 설>

통합예약시스템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수강권의 양도금지) 수강권  
-----  
-----  
-- 승인 없-----  
----- 대여할 수 없다.

제7조(사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관 운영상 -----  
----- 구  
분 없-----.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강사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강사위촉 심사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강사를 초빙 위촉함에 있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강사의 자격기준) ① 각 교육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직업훈련 교사로서 자격과 강의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과정별 전문 강사
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강사위촉 심사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강사를 초빙 위촉함에 있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강사위촉 구비서류) ① 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 5. (생략)
6. 경력증명서(국가기관, 공공단

④위촉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당해연도 교육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종료시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강사의 자격기준) 각 교육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직업훈련 교사로서 자격과 강의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과정별 전문 강사
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강사위촉 구비서류)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경력증명서

<p><u>체근무)</u>  ② (생 략)  제11조(강사해촉) ①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강사해촉) (현행 제1항과 같음)</p>
---------------------------------------------------------	------------------------------------------------

##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신덕동 637-2번지 외 1필지(646-10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5. 6. 30.

###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신덕동 637-2번지 외 1필지(646-10번지)
2. 도로면적 : 323㎡
3. 도로길이 : 50m
4. 도 로 폭 : 6.5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4,556	323	
신덕동	637-2	답	2,036	234	
	646-10	임	2,520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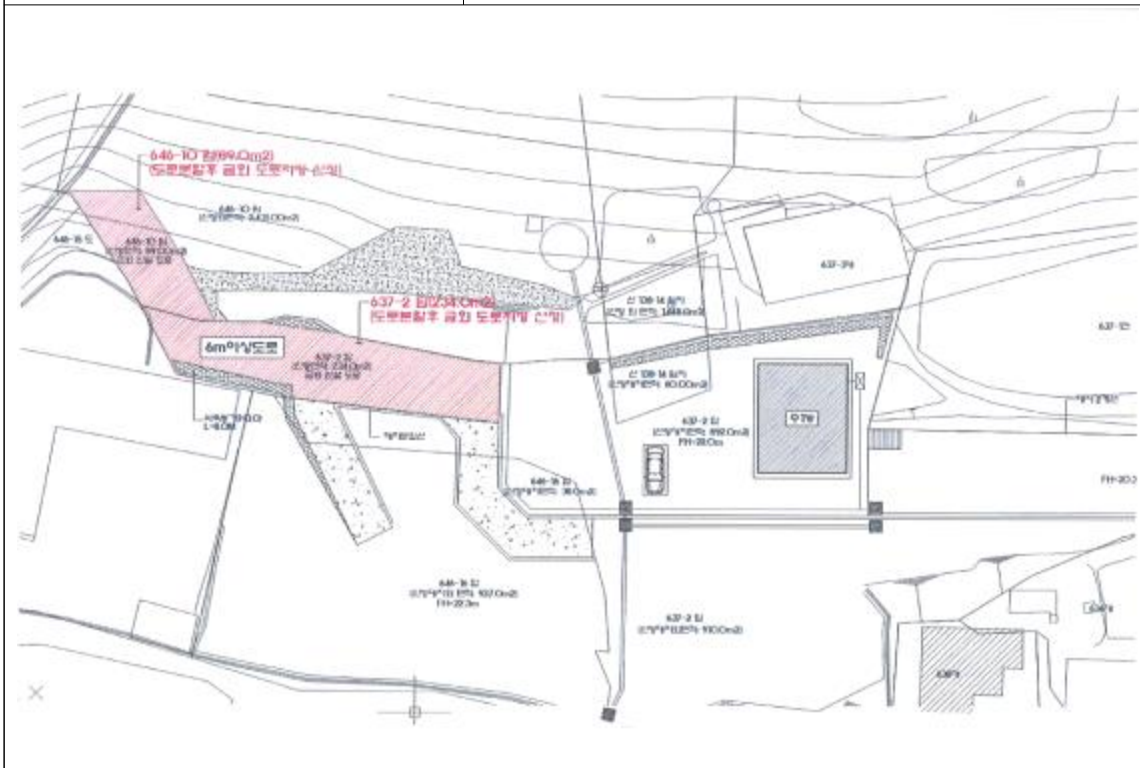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 위치도



### 현황도



## 공 고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 여 수 시 장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웅천국민체육센터」 신설에 따라 조례에 관련 근거 명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조문을 상위법 또는 현실에 맞게 개정
- 수영장에 대한 별도의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마련

### 2. 주요 내용

- (안 제3조, 제7조) 웅천국민체육센터 명칭, 위치, 이용료 등 근거 마련
- (안 제8조) 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조문 개정
- (안 제9조) 수영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추가

### 3. 개정조례안 : 붙임 1

###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 5. 입법예고기간 : 2025. 7. 1. ~ 2025. 7. 21.(20일간)

##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년 7월 21일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제출기관 : 여수시장(체육지원과)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진남스포츠센터 2층(오림동)
  - 팩 스 : 061-659-5809
  - 전자메일 : cij0582@korea.kr

## 7.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체육지원과(☎ 061-659-3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

###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국, 도 단위 체전 등에 여수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훈련
4. 여수시가 유치한 전지훈련(여수시에서 3박 이상 숙박할 경우)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7. 관내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 체육선수의 연습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목욕탕과 수영장 이용료는 예외로 한다.

1. 제2조제2호의 가목(유아), 나목(어린이), 마목(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제8조제4항(중전의 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1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가정위탁세대

1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장기기증자) 및 제3호(장기기증희망자)에 해당하는 자

13. 두 자녀 세대에서 막내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인 세대원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1. 제2조제2호 다목(청소년)에 해당하는 자

2. 제2조제2호 바목(군인)에 해당하는 자

3.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제9조제1호 중 “별표 8”을 “별표 8과 별표 9”로 한다.

별표 1 ~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9를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개정안]

명 칭	세부 시설 명	소재지
진 남 체 육 공 원	· 진남경기장 · 진남체육관 · 야구장 · 실내야구연습장 · 인라인롤러경기장 · 씨름장 · 유도장 · 테니스장 · 실내테니스장 · 국궁장 · 보조운동장 · 족구장 · 게이트볼장 · 진남복합구장 · 진남배드민턴장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오림동)
진 남 수 영 장	· 실내수영장 · 다목적실	여수시 내동1길2 (오림동)
망 마 경 기 장	· 주경기장 · 준비운동장 · 국궁장 · 게이트볼장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시전동)
망 마 국 민 체 육 센 터	· 실내수영장 · 다목적체육관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시전동)
장 애 인 국 민 체 육 센 터	· 다목적체육관 · 체력측정실 · 체력단련실 · 장애인목욕탕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오림동)
웅 천 국 민 체 육 센 터	· 실내수영장 · 다목적체육관	여수시 웅천중앙로 106
홍 국 체 육 관	· 홍국체육관	여수시 선소로 93(학동)
돌 산 체 육 관	· 돌산체육관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18
시 립 테 니 스 장	· 시립테니스장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이 순 신 공 원 테 니 스 장	· 이순신공원테니스장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공원 일대
진 모 축 구 장	· 진모축구장 · 진모그라운드골프장 · 진모리틀야구장 · 진모풋살장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196
국 체 동 육 복 시 합 설	· 복합구장	여수시 신월로 648(국동)
울 촌 장 도 파 크 골 프 장	· 울촌장도파크골프장	여수시 울촌면 울촌산단2로 241-55

(별표 2)일반(연습) 이용료 [개정안]

(단위: 원)

구 분 시설별		일반인 (100%)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80%)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50%)	제8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자 (면제)	비 고
주경기장	천연	50,000	40,000	25,000	면제	구장당
	보조	40,000	32,000	20,000	〃	〃
보조구장	천연	30,000	24,000	15,000	〃	〃
	보조	25,000	20,000	12,500	〃	구장당 (복합구장 포함)
축구장(국동,진모)		30,000	24,000	15,000	〃	구장당
망마웅천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1,500	1,200	750	〃	1명당
야구경기장		30,000	24,000	15,000	〃	구장당 (리틀야구장포함)
실내야구연습장		20,000	16,000	10,000	〃	실내이용기준
인라인롤러경기장		1,500	1,000	750	〃	1명당
테니스장 (1면당)	실외천연코 트	10,000	8,000	5,000	〃	1면당
	실외하드코 트	10,000	8,000	5,000	〃	〃
	실내하드코 트	15,000	12,000	7,500	〃	〃
진남배드민턴장		1,500	1,200	750	〃	1명당
진남,홍국,돌산 체육관		30,000	24,000	15,000	〃	구장당
족 구 장(실내)		10,000	8,000	5,000	〃	〃
게이트볼장		10,000	8,000	5,000	〃	〃
그라운드골프장		25,000	20,000	12,500	〃	구장당
풋살장		25,000	20,000	12,500	〃	〃
유 도 장		10,000	8,000	5,000	〃	〃
씨 림 장		10,000	8,000	5,000	〃	〃
국 궁 장		1,500	1,200	750	〃	1면당
장애인 국민체 육센터	체력 측정실					장애인에 한함
	체력 단련실					〃
	장애인 목욕탕				2,000	〃
수영장	회원권(월)	60,000	48,000	30,000	30,000	강습료 : 12,500/월
	1회사용	4,000	3,200	2,000	1,500	
울 촌 장 도 파 크 글 프 장		2,000	1,600	1,000	면제	편의 거주자 5,000원 36홀 기준

## 비고

1. 이용시간 :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초과시간 1시간당 해당 이용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하며,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부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토요일, 공휴일의 이용료는 위 이용료의 150%로 한다.
3. <삭 제 >다음의 각 목의 사람은 일반인 이용료의 50%를 감경한다.
  - ~~가. 「국기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체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 송환 및 태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역류지출신 포로가족~~
4. 수영장
  - 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수영장 월 회원권 요금의 15%를 감경한다.
  - 나. 단체입장 감경이용료는 1회 사용 시 일반인 3,000원, 청소년·군인·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1,500원으로 한다.
  - 다. 수영장 내 헬스장 사용료 및 에어로빅·요가 강습료는 각각 월 35,000원으로 하며, 헬스장 이용료는 1일 2시간 이내 2,000원으로 한다. 또한, 세 가지(헬스장, 요가, 에어로빅)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강습료를 감경하여 월 80,000원으로 한다.(수영장 이용료와 강습료는 제외한다)
  - 라. 수영장 강습료는 월 12,500원으로 한다.
5. 테니스장
  - 가. 테니스장(실외코트에 한정한다)의 월 회원권 요금은 일반인 40,000원, 청소년·군인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테니스 강습을 받는 사람의 경우의 월 회원권 요금은 일반인 월 60,000원, 일반인 외 사람은 월 48,000원으로 한다.
  - 나. 테니스 강습료는 일반인 월 90,000원, 일반인 외 사람은 월 72,000원으로 한다.
6. 장애인국민체육센터
  - 가. 여수시에 등록된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다만, 다목적체육관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다)
  - 나.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유아는 장애인목욕탕 이용 시 이용료의 50%를 감면한다.
  - 다. 장애인목욕탕 중 가족탕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하지절단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동반가족(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을 포함한다) 1명의 사용료는 2,000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감면대상자일 경우 동반가족(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을 포함한다)도 감면대상자에 포함한다.
7. <삭 제 >전남수영장, 망마국민체육센터
  - ~~가.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이용요금은 월 55,000원으로 한다.~~
  - ~~나. 개인용 사물함 이용요금은 월 5,000원으로 한다.~~

(별표 3) [개정안]

## 부속시설이용료(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 금			비 고
전 기	라이트 시설 (구장별 조명)	구장/사용료(기본료+시간당전기사용료 합산)	기본료	전기사용료(1시간당)	※ 기타시설은 시설용량 고려하여 별도 산정
		진남경기장	90,000	80,000	
		진남체육관	40,000	14,000	
		진남야구장	50,000	20,000	
		진남실내야구연습장	10,000	1,500	
		진남테니스장(실외)	6,000	1,000	
		진남테니스장(실내)	6,000	1,000	
		진남보조축구장	30,000	8,000	
		진남축구장	2,000	1,000	
		진남복합구장	30,000	8,000	
		홍국체육관	16,000	4,000	
		돌산체육관	9,000	3,000	
		망마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7,000	1,000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11,000	2,000	
		웅천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11,000	2,000	
		인라인경기장	50,000	20,000	
	진남수영장 회의실	10,000	5,000		
일 반 전 기	기본료(10,000원) + 전기사용료(1시간당 5,000원)				
전 광 관	대형 (주경기장) 50,000원 + 전기사용료(1시간당 5,000원) 소형 (주경기장) 30,000원 + 전기사용료(1시간당 5,000원)				
냉·난방료	구장/사용료(기본료+시간당전기사용료 합산)	기본료	전기사용료(1시간당)		
	진남체육관	40,000	20,000		
	홍국체육관	30,000	10,000		
	돌산체육관	20,000	5,000		
	망마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20,000	5,000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30,000	10,000(가스사용료)		
	웅천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30,000	10,000		
음 향 설 비 (1일)	마이크 3개 기본 제공(1개√추가√시 5,000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 50,000원 테니스장(정구장), 기타 : 30,000원				
공 한 지 (3.3㎡당)	(7,000원×사용일수)			상행위 목적	

(별표 4) 행사사용료 [개정안]

시설별		구분	체 육 행 사		일 반 행 사		비 고
			평 일	토요일, 공휴일	평 일	토요일, 공휴일	
주 경기장	육상장(트랙)		50,000	75,000	100,000	150,000	
	축구장(필드)	천연	100,000	150,000	200,000	300,000	구장당
		인조	80,000	120,000	160,000	240,000	“
보조구장		천연	60,000	90,000	120,000	180,000	“
		인조	50,000	75,000	100,000	150,000	구장당 (복합구장 포함)
축구장(국동, 진포)			60,000	90,000	120,000	180,000	구장당
실 내 체 육 관			60,000	90,000	120,000	180,000	다목적 체육관 포함
야 구 경 기 장			60,000	90,000	-	-	구장당 (리틀야구장포함)
실내야구연습장			40,000	60,000	-	-	구장당
인라인롤러경기장			60,000	90,000	-	-	“
테니스장	실외천연코트		20,000	30,000	-	-	1면당
	실외하드코트		20,000	30,000	-	-	“
	실내하드코트		30,000	45,000	-	-	“
진남배드민턴장			12,000	18,000			1면당
망마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12,000	18,000			1면당
웅천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60,000	90,000	120,000	180,000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60,000	90,000	120,000	180,000	
족 구 장(실내)			20,000	30,000	-	-	“
게 이 트 볼 장			20,000	30,000	-	-	“
그라운드골프장			50,000	75,000	100,000	150,000	구장당
풋 살 장			50,000	75,000	100,000	150,000	“
유 도 장			40,000	60,000	-	-	“
씨 림 장			40,000	60,000	-	-	“
국 궁 장			40,000	60,000	-	-	“
울촌장도파크 골프장			50,000	75,000	100,000	150,000	

비고

1. 사용시간 : 기본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초과 시간 1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2. < 삭 제 2022. 9. 2.>
3. 행사 참여인원(선수 및 사용자 측의 참여인원 등 행사 개최에 필요한 모든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 가. 행사 참여인원이 100~499명인 경우 해당 사용료의 30%
  - 나. 행사 참여인원이 500~999명인 경우 해당 사용료의 50%
  - 다. 행사 참여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해당 사용료의 70%
4. 행사시설물의 사전 설치 및 철거를 위한 사용료는 행사 사용료의 50%로 한다.

(별표 9) 수영장 이용권 및 사물함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개정안]

구분	내 용	반 환 기 준
월권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등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 등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일권	사용 당일 취소	반환금액 없음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p> <p>1.·2.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3. (생략)</p> <p>② 체육시설을 다음 각 호의 행사나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는 제외한다.</p> <p>1. ~ 6. (생략)</p> <p>7.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는 중</p>	<p>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전국, 도 단위 체전 등에 여수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훈련</u></p> <p>4. <u>여수시가 유치한 전지훈련 (여수시에서 3박 이상 숙박할 경우)</u></p> <p>5.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관내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는</p>

목 체육선수의 연습

8. (생 략)

9. 전국, 도 단위 체전 등에 여  
수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훈련

10. ~ 12. (생 략)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본항 신설 202

1. 3. 15.>

1. ~ 8. (생 략)

종목 체육선수의 연습

8. (현행과 같음)

<삭 제>

9. ~ 11. (현행 제10호부터 제1  
2호까지와 같음)

③ 제3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  
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전부  
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목욕  
탕과 수영장 이용료는 예외로  
한다.<본항 신설 2021. 3. 15.>

1. 제2조제2호의 가목(유아), 나  
목(어린이), 마목(경로우대자)  
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심한 장애인  
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④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9.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1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가정위탁세대

1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장기기증자) 및 제3호(장기기증희망자)에 해당하는 자

13. 두 자녀 세대에서 막내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인 세대원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1. 제2조제2호 다목(청소년)에 해당하는 자

④ (생략)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이용료 등을 반환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라 이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용 또는 사용을 취소할 경우 징수한 이용료 등을 별표 8에 따라 반환

2. ~ 5. (생략)

2. 제2조제2호 바목(군인)에 해당하는 자

3.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  
-----  
-----.

1. -----  
-----  
-----  
----- 별표 8과 별표 9-----  
-----

2. ~ 5. (현행과 같음)

## 한시적 일방통행 구역 지정 행정예고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다수의 해수욕장 방문객들이 예상되어, 안전한 물놀이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시적 일방통행 지정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

# 여 수 시 장

### 1. 행정예고 내용: 한시적 일방통행 지정 시행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 가. 한시적 일방통행 지정 및 운영일자

연번	위 치	구간	내 용	운영일자
1	여수시 만흥동 94-3 ~ 만흥동 1464-1	약 740m	한시적 일방통행 지정	2025. 7. 11.
2	여수시 오천동 350-7 ~ 오천동 102-8 ~ 오천동 133	약 800m		2025. 8. 17.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 나. 세부장소 : 【붙임 1】 참고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공고)기간 : 2025. 7. 1.(화) ~ 7. 10.(금), 10일간
4. 예고(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한: 2025. 7. 1.(화) ~ 7. 10.(월) 18:00, 10일간

다. 제출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

라. 제출양식: **【붙임 2】** 참고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우편: 여수시 시청로 1, 교통관제센터 1층 주차차량과(학동) (우)59673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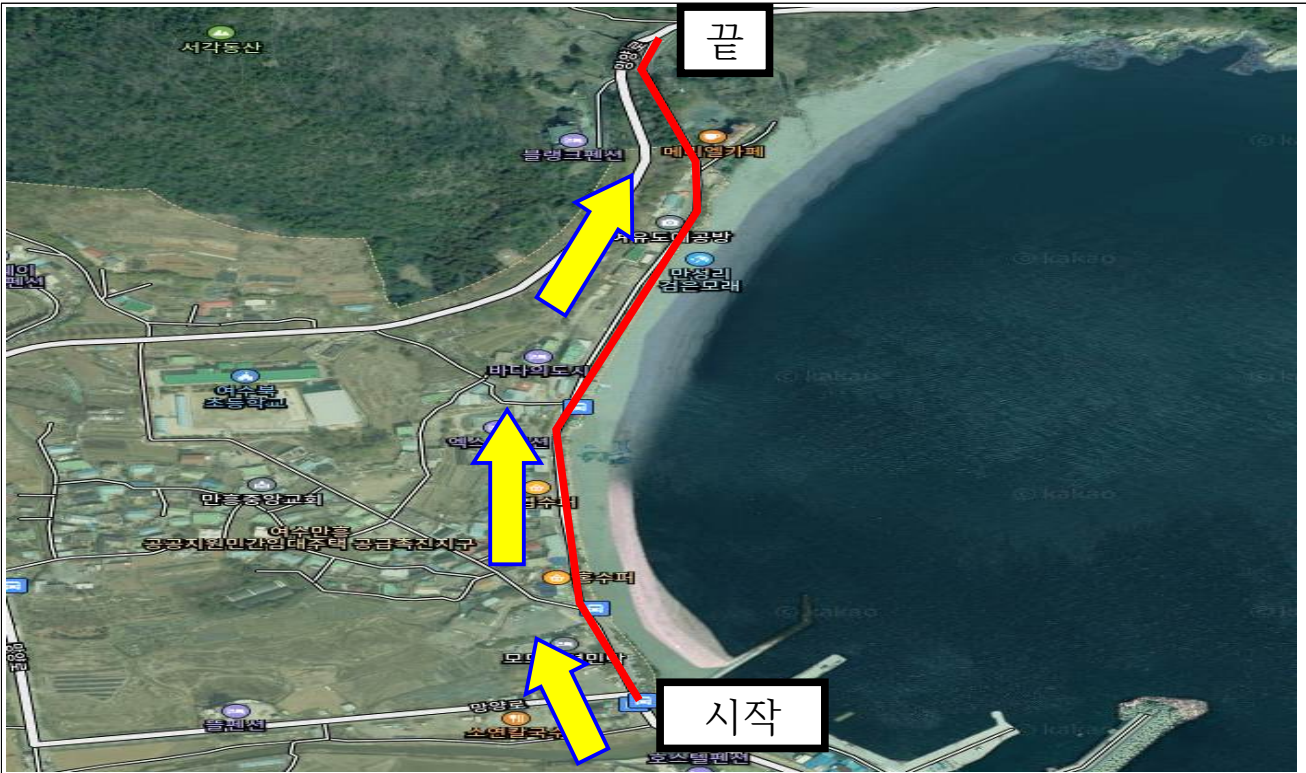
- 팩스: 061-659-5864                      ※ 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바.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061-659-4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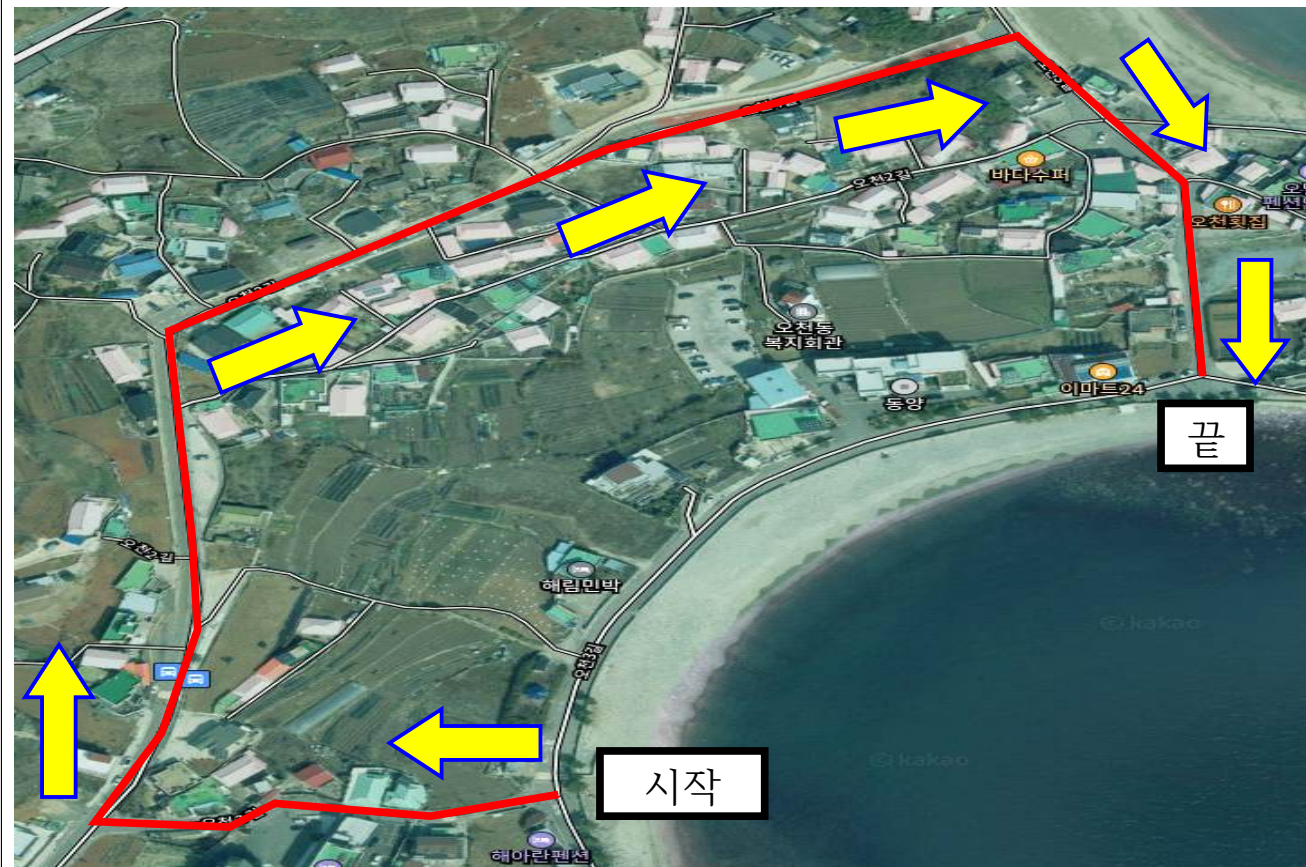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한시적 일방통행로 지정 구간위치도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붙임 1】 한시적 일방통행로 지정 구간위치도**



만성리 해수욕장 개장기간 임시 일방통행 구간(약 740m)



모사금 해수욕장 개장기간 임시 일방통행 구간(약 800m)



여수시 공고 제2025-2006호

##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 양식업 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양식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양식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2009	패류 양식	바닥식	15	화정 여자	2025.07.01. 2035.06.30.	여수시 어항단지로 **	(사)여수수산 인협회	신규개발
12010	패류 양식	바닥식	15	화정 여자	2025.07.01. 2035.06.30.	여수시 어항단지로 **	(사)여수수산 인협회	신규개발
11226	패류 양식	바닥식	5	화정 여자	2009.05.27. 2029.05.26.	여수시 울촌면 서부로 **	정*심	대체개발
11273	패류 양식	수하식	2	돌산 울림	2011.07.14. 2031.07.13.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대올어촌계	대체개발
11734	패류 양식	수하식	2	돌산 울림	2017.07.05. 2027.07.04.	여수시 소회1길 **	김*문	대체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5. 07. 01.

# 여 수 시 장

##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 어업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어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0490	마을어업	-	12	화양 읍적	2025.07.01. 2030.06.30.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읍적 어촌계	신규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5. 07. 01.

여 수 시 장